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2. 7.(화)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 현 창조기획담당관,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 현 창조기획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 현 창조기획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의결사항

###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05-31 ~ 3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는 지난 ‘15년 8월 18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을 한 이후에 ‘15년 말에 1차 조사에 의해서 ‘16년 말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업종의 총 2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첫째로 (주)사람인에이치알, (주)매드포스터디, (주)온라인투어, (주)노랑풍선 그리고 (주)아이엠아이는 4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아이엠아이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5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파기를 위반한 (주)사람인에이치알, (주)매드포스터디, (주)온라인투어, (주)노랑풍선 그리고 (주)아이엠아이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되, 소기업에 해당하는 (주)매드포스터디에 대해서는 50%를 감경해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주)아이엠아이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되, 역시 특별히 가중·감경할 만한 사

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내용은 충분히 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피심인 제출의견을 보면 2페이지 매드포스터디가 제출한 부분 제일 아래 쪽을 보시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기업으로서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최근 자료가 아닌 갱신되지 않은 자료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인한 것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그것은 그쪽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그것을 받아줄 만한 타당한 이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겠지만 위법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해야 할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안내 이런 것들은 충실히 잘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위법이나,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업무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관련 정부 사이트에서 최근 자료가 아닌 갱신되지 않은 자료가 최신자료인 것처럼 존재하여 최신자료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www.i-privacy.kr' 사이트에서 자료실을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당일 날 조사할 때 그 사이트의 페이지를 직접 확인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어느 정부 사이트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저희 것들이 아니더라도 관련부처와 서로 협업을 해서 정보통신망법은 저희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또 이런 사업자들이 다른 부처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업자들이 시행령 개정내용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난 2015년 말 1차 조사 때는 27개 사업자를 조사해서 8개 사업자가 적발됐네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에는 26개 사업자를 조사해서 5개 사업자가 적발된 것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보통 수준입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선되어 가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100% 다 지켜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장 업계에서 시한을 잘 지켜서 개인정보 파기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파기하는 것을 기획조사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계속 잘 관리·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큰 기업들은 잘 관리를 합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적발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에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었고 하나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개인정보관리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지나...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직원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업종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알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하여간 중요한 것은 각 기업들이 법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웹사이트상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또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하는 것도 조금 더 작은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까지 다니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물론 제재는 하지만 저희들도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05-3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동의·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22일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주요 변경사항으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수정 권고한 내용과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권한의 범위와 관련해서 동의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필수앱’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일부인 기능”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그리고 동의 대상인 정보 중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로 동의 대상인 ‘센서’ 기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로 수정하고, 동의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 운영체제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와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관련해서 이미 판매된 소프트웨어,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운영체제의 경우 회수·수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과 용어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사진, 동영상”을 “영상”으로, “위치”를 “위치정보”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면 3월 23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래 시행령 내용에 보면 개별동의 선택이 불가능한 방식, 소위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미만 OS의 경우에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접근권한만 설정해 놓고 이 필수적 접근권한에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만약에 필수적 접근권한이 아닌 선택적 접근권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필수적 접근권한에 포함시켜서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사후 점검을 통해 적발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사후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런 앱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동안 지속적으로 앱이나 웹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사항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에도 한번 실태점검을...

○ 최성준 위원장

-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제재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 과태료 규정이 이 시행령 안에 담겨 있고 동의를 위반해서 동의해야 하는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선택적 접근권한을 포함시켜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올해는 특별히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3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히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제재를 여쭙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제재에 앞서서, 다시 말하면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알려서 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여러 관련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잘 몰라서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보고드릴 사유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적용범위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서 당사자 광고와 제3자 광고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가지의 원칙과 조치방법으로 먼저 첫째는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입니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방법·목적 및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민감정보 수집·생성·활용을 금지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

제공을 금지하며, 그다음에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과 관련해서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이용자의 단말기 또는 협회 등의 단체 웹페이지 중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또 이용자 입장에서 맞춤형 광고의 수신 또는 쿠키의 차단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의 '붙임'과 같이 별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노출,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우리 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 최초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자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지만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아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기간을 잡아놓은 것도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향후 계획에 교육·캠페인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 이것을 위한 특별한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은 없는데 정보통신망법 교육과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사업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따라 달라고 하는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들도 잘 숙지해야 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

민들이 많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어렵게 만든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지금 말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매년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그 교육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통위 홈페이지라든가 네티즌들, 흔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 들여서 거리에서 캠페인 해서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방통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숙지하고 이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홍보노력이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노력이 아니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작년에 저희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홍보를 위해서 각종 SNS, 방통위 블로그, 홈페이지 그리고 또 웹툰이나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정말 매우 전문적이고 굉장히 개인정보보호 제도에서 앞선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 이것 정말 매우 편리하고 첨단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이지만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말 개인정보에서 빅브라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아니지만 공존하는 것인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 이용의 행태정보들 목적 달성을 끝낸 뒤에는 파기하도록 보관을 시한부로 정해 줘니까? 뒤에 그것이 나와 있던데...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보관 기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서로 차이가 많겠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미리 이용자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보관·이용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텐데 임의로 하지 않고, 마치 아까 나온 것처럼 주민등록 보호기간을 시한으로 정해서 우리가 한 번씩 기획조사하는 것처럼 이런 행태정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한번 써먹고 목적이 달성됐는데 계속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한 번씩 기획조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임의로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런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업종을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업종은 행태정보 보관기간 6개월, 어떤 업종은 1년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기준을...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사업자들과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같은 쇼핑물이라고 하더라도 쇼핑물 안에서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 자동차를 파는 회사와 등산용품을 파는 회사 이런 데서 보유하고자 하는 행태정보에 대한 보유기간이 동일할 수가 없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보유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난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

다, 그것이 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연구과제로 생각하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최초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에 시대에 각종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선도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붙임>에 보면 7페이지에 만 14세 미만자 행태정보 조항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14세 미만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용행태를 보면 만 14세 미만 같으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 1도 해당됩니다. 지금 이것을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4세 미만이 구매력은 없지만 아마 상품정보를 보고 또 자기한테 맞춤형 광고 오는 것을 보고 예를 들면 부모를 즐라덴다든가 해서 반드시 구매를 관철시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걸러질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만 보면 광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그냥 고지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행태를 잘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차단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초의 제정이기 때문에 보완을 많이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조항도 보면 '만 14세 미만이면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은 미묘하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용자가 가입해서 만 14세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확인할 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또 14세 미만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에서는 주 이용자 자체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는 행태정보를 수집해서 광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뒀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식별이 되지만 로그인 하지 않고 후자일 때는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더 상세하게 담는 것에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 과정 등에서 또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지금 생각이 난 것을 뒤늦게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이 가이드라인 명칭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가 아주 예외적인 것은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개인정보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들이 더 다수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의 투명성 원칙에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행태정보이기 때문에 소위 사전동의를 필요 없지만 사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려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제목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오해가 소지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태정보이긴 하나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빅데이터와 같이 행태정보와 맞춤형광고를 하기 위한 특징인이거나 특정기기, 단말기나 PC를 특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정보가 아닌 비록 행태정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개인정보, 우리가 말하는 광의의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특정기기든 특정인을 나타내든 어떤 형태든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이유조차 없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비즈니스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특정 개인을 맞춤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하지만 타겟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인정보화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 개인정보보호의 엄격한 기준을 또 다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그 원칙을 그대로 다 적용하기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도 있어서 약간 시장 현실을 감안하되, 최대한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가이드라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가이드라인 내용이 사실 특정인의 행태정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특정인의 행태정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개인정보와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도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행태정보로 어떤 형태든 그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분석해서 특정 행태정보가 모아진다면 사실상 이름이나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또 행태정보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뒤늦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을 빼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대신 개인정보라는 것을 빼고 우리는 행태정보라는 것도 명칭상 고민한 적은 있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렇게...

○ 최성준 위원장

- 꼭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 제목에 안 넣더라도 지금 이 대상이 무엇이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하는 것이라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정합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제기될까 봐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최성준 위원장

- 제정할 때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태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행태정보가 바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그것이 누적적으로 돼서 분석 가능해진다든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들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제목을 일단 그렇게...

○ 최성준 위원장

-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빅이슈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다, 행태정보보호다, 이 말이 빠지면 저는 또 이것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전반에 걸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목과 가이드라인 내용이 다루는 범위가 또 불일치 되고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또 안 맞게 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이 '행태정보 가이드라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방통위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보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에 인접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와 결합되면 반드시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고, 행태정보가 개인정보와 결합이 안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보호노력이 필요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정확한 말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이런 데 대해서 착안을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자 하는 명분이나 정당성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맞춤형 광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에 준하는 그런 행태정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이 제목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어찌 보면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 이름으로 출발해서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아까 더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더 적합한 말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설명회, 또 이용자 상대로 하는 교육, 캠페인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혼동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태정보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에 준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뒤에 계신 기자 분들께서 다 논의과정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다른 데에 브리핑하실 때도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일단 조치해 놓기로 하고 제목을 그대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혹시 더 좋은 바람직한 명칭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그간 금지행위 규정의 이용자

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실제적 이용자'뿐만 아니라 '계약체결과정상'의 이용자와 또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적용해 왔습니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만 정의하고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 규제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고, 또 금지행위 중에서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그리고 중요사항의 미고지 이 3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결합판매서비스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붙임>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입법례와 같이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다.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6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4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재승인을 하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5년 7월 9일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한바 있고, '16년 8월 18일 종편PP '15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라서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그리고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31일 종편PP 4사가 '16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행실적 점검대상은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사업계획상의 '16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상의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서 TV조선 7건, 채널A 4건 감소하였고, JTBC는 1건, MBN는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상의 '16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부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하단에 '16년도 이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60%~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

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상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여부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사업계획상 재방비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해서도 종편PP 4사 모두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치방향입니다.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장조사, 사업자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이행실적을 '17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행 미흡 항목은 그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승인 심사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까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년 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한바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TV조선·JTBC·채널A에 대해서는 이번 2월에 예정된 종편PP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점검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TV조선 같은 경우에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매년 증가를 했고, 3년 중 작년에는 161건으로 거의 폭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숫자가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채널A도 74건의 심의조치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제재를 보면 161건의 심의조치를 받았지만 법정제재는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정제재는 적게 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건건별로 세부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만큼 심의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많을 경우 방심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심의를 반드시 받았다고 해서 꼭 법정 제재로 가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행정지도까지 받았습시다. 우리가 재판을 예를 들면 무죄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다 덮여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것도 실형 유죄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감점이나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정량적으로 행정지도 제재 부분에 대해서 감점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참작해서서 정성평가에서 고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161건이나 되는 심의건수 중에 147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재판으로 치면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는 우리가 거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행정지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떠한 심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재까지 갈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개선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권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널티로 바로 연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법정제재만 별점이 들어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TV조선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패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이 이런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 제재를 하는, 물론 자율적인 제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출연 패널에 대해서는 출연정지가 간다든가 그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 것 혹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서 외부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내역에 대해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기반국에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했던 패널은 다음에 못 나온다고 하는 불이익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개별 건건별로 다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 방송기반국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각 방송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이런 패널에 대한 출연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편의 경우는 모두가 지적합니다만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행실적 점검에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V조선에 대해서 지난 재승인 때 권고사항으로 조화로운 편성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는 이행실적 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 주시청시간대 보도편성비율이 42%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서 재승인 심사에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방송평가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평가에 관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반영되겠네요?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방송평가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6년 하반기 분부터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

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도 담당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행실적 점검한 결과 공적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을 이행했지만 여전히 심의제재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투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정성평가에 들어가겠네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김석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히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작년에 이행실적 점검을 했었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 이행 촉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행 촉구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점검을 했었고, 그 결과 사실은 보도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이행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에 맞춰서 낮추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인데 지난번에 순수 공익적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따로 제출받았고, 그래서 이번 재승인 심사 시에 심사위원들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위원들께서 보시고 이것이 과연 자기들이 제출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만 포함시켜서 실적을 낸 것인지 판단하시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기본책무지요. 그러니까 방송이 국민 화합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리고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소수·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내용을 다룰 때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정제재는 감소하였으나 총 심의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편 4사 공통적인 내용이고, 행정지도 또한 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행정지도로 분류된 부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 논란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여러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제재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투자 계획,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실제로 종편을 새롭게 승인해 준 이유가 콘텐츠에 투자 제작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 국제 경쟁력 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목표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을 심사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심사 평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기간 내내 미이행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투

자한 JTBC가 1,300억원을 투자했고, 작년만 놓고 보면 순서로 보면 MBN이 550억원, 그다음에 TV조선이 570억원, 그리고 채널A가 739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여기에서 어느 종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광고실적도 한번 점검할 때 보면 어느 종편은 공식적인 광고매출이 500억원에 비공식적인 협찬이 광고를 뛰어넘는 500 몇 십 억 정도까지 달성했던 종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종편들이 그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출범한지 6년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 인력들을 대거 고용 창출해서 경상비를 지출할 것도 아닌데 혹시 수입·지출내역을 본 것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는 받고, 그것을 보면 특정사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마다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 대비 핵심 투자가 바로 콘텐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종편PP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심사위원들 꾸려서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 기본계획을 우리가 의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사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부분들은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편이 출범 6년차 그리고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의 공적책무나 공공성·공정성이 계속 해서 시비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석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막말이나 오보·편파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문제되는 패널들이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패널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널들의 경력들을 표시하도록 그런 지도도 하신 적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저희가 이행추구를 하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고, 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예전에 경력들을 사전에 출연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스스로 적어서 체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이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치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지요.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금년에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총선에 특정 정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신청했던 그런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활동 경력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활동 경력에 대해서 일절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다, 특임교수다, 이렇게 전문가인양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선거가 있는 해라면 패널들의 정당활동 경력이나 당적 여부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인지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완전히 중립적인 전문가인양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의 경영의 자율성이나 편성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종편PP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방향으로 콘텐츠 제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야지요. 최소한 여기에 투자 절대규모도 지난 1차 재승인 심사를 거치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행률이 90%도 안 됩니다.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투자금액은 비슷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재승인하면서 투자계획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승인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첫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것들, 물론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은 잘못된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제작 투자계획들은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광고 영업이나 협찬 유치 그리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재전송 협상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역시 이행실적 점검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있을 종편 보도PP들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둔 항목인데 재승인 심사 대항목 5개 거기에서 더 나누어서 30여개의 세부기준이 있습니다만 총점 1,000점에서 65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그러나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핵심 항목,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에서 50%를 받지 못하면, 50%에 미달하면 과락제를 적용해서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적인 항목이고 일종의 유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단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많은 토론, 또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TV조선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제재만 보더라도 18건, 22건, 14건입니다. 채널A 10건, 13건, 9건 이런 데 이것이 조금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러나 JTBC나 MBN이 봤을 때는 늘었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법정제재 수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JTBC는 8건, 4건, 5건, 그러면 TV조선의 3분의 1 수준이지요. MBN은 그것보다 더 아래, 그런데 1년마다 한두 건씩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 총 양이 있고 법정제재,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정하게 해서 총 심의조치 중에서 아무런 감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별점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를 어떻게 갈랐는가, 그것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항목이 이 사안이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심사결과를 낸 것인데 그것을 종편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법정제재가 타당하고 행정지도가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짧은 시간에 모든 건에 대해 다시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문제에서 종편들이 개선되고 있느냐, 오히려 더 악화되느냐, 역주행이냐, 아니면 답보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재승인 심사항목 여러 개 중에서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둔 것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말고 기획·편성의 적절성 여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2014년 심사에서 조건부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의 적절성, 애초에 종편이 도입됐을 때 방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입법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편성하도록 한다' 그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못 얻으면, 50%에 미달하면 그것은 총점 650점이 넘어도 과락,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양대 핵심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은 우리가 이행실적 중간점검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콘텐츠 투자 문제입니다. 콘텐츠 투자는 편성비율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방송사는 콘텐츠 투자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알다시피 보도 분야의 프로그램 제작은 제작비가 싸게 먹힙니다. 싼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양이나 오락,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른 오락프로그램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콘텐츠, 자신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보도편성비율도 안 지켜, 콘텐츠 투자 약속도 안 지켜, 이중적으로 정책규제 당국의 의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JTBC 목표치가 다른 종편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데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이행률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행률이 낮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만 비판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을 때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수주와 연계해서 광고 수주액의 몇 퍼센트 이상은 콘텐츠 투자에 쓰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송사업을 하면서 전파나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광고, 그 광고에 대비해서 콘텐츠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품격 높은 방송으로 가는 방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송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맡겨 왔는데 어느 정도는 규제도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방송을 하면서 최소한 광고 수주액에 연계시켜서 얼마 이상 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종편 4사가 콘텐츠 투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률이 높다, 낮다고 평가해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정부에서 적절한 콘텐츠 투자액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 투자는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14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재승인 조건 공통입니다. 재승인 조건이 모든 종편에 다 부과가 되고 있고, 권고사항이 개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 중에서는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편PP 위상에 걸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재정적 능력 보완책 수립할 것이라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재승인 조건으로 올라갈 만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안 지켜지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재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는 JTBC, 그리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여타 종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조건 또한 전혀 다르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통 재승인 조건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공통 재승인 조건을 추리되 그 외 부분들은 종편의 특성에 맞게 승인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가 있는 것 중에 승인조건으로 부과해서 강제성 있게 우리가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고 미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종편 재승인심사의 재승인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까지 번져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행실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재승인 심사 전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재승인 조건이나 또는 권고사항을 검토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마치 심사를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 올리는 목적이 아까 개요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분방향,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14년 이행실적, '15년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 공익성 부분이나 콘텐츠 투자 부분은 여기에 팩트로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조치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위원회에서 조치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보고안건으로 안 올리고 의결안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방향 첫 번째에 이런 저런 시간제약 때문에 듀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따라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표현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이행실적 중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결국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실적 그 부분과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가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심의조치 건수는 증가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콘텐츠 투자가 미흡하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행정처분 없이' 이 말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온 점검결과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적법절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처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분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워딩대로 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앞부분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치방향만 주로 쪽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려면 위에 기술되어 있는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자 의견수렴 등 적법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사실은 확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라는 표현보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표현의 문제니까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행실적 점검을 한 내용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다 제공하실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원래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표현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 이외에 이 안건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5분 폐회 】